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문공보관 김중우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4. 4. 21.(일)

제 목

SPC 그룹 부당노동행위 사건 수사 결과 - 회장·대표이사 구속기소 등 19명 기소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하여, **SPC 그룹 회장(A) 및 (주)SPC 대표이사(B)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前 (주)SPC 고문(C), 자회사 (주)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G)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과 노조관계자 등 총 18명, (주)피비파트너즈 법인을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 검찰은 SPC 그룹 본사와 회장(A) 등에 대한 압수수색, 사측 관계자 및 제빵기사 등 3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실체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수사 결과, 이들은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주)피비파트너즈 내 노동조합인 'ㄱ노조'가 사측의 노조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 2021. 2.~2022. 7. ㄱ노조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 2021. 5. ㄱ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승진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인사에서 배제하고,
 - 2019. 7. 사측에 친화적인 ㄴ노조의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는 한편, 2021. 4.~2022. 8.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여 인터뷰 등을 하게 하는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실을 규명했습니다.
- 특히 회장 A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결정·지시하는 한편,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언론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연번	피고인(연령)	범행 당시 신분(직책)	처분
1	A (74세)	SPC 그룹 회장	구속 기소
2	B (62세)	SPC · (주)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	구속 기소
3	C (70세)	SPC 고문	불구속 기소
4	D (59세)	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부사장)	불구속 기소
5	E (63세)	SPC 대외협력실장(부사장)	불구속 기소
6	F (58세)	SPC 홍보실장(전무)	불구속 기소
7	G (63세)	(주)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임원(전무)	불구속 기소
8	H (55세)	(주)피비파트너즈 품질관리실장(상무보)	불구속 기소
9	I (64세)	(주)피비파트너즈 제2사업본부장	불구속 기소
10~17	J~Q (50~61세)	각 (주)피비파트너즈 8개 사업부장	불구속 기소
18	R (53세)	ㄴ노조 위원장	불구속 기소
19	(주)피비파트너즈	법인	불구속 기소

※ 구체적인 피고인 · 공소사실 및 처분 내용은 별첨 표 참조

2 공소사실 요지

가. ㄴ노조 조합원에 대한 탈퇴 종용 및 불이익 취급

- (A, B, G, H, I, J~Q, R 등 14명 공동범행) 공모하여 2021. 2.~2022. 7.경 ㄴ노조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여 ㄴ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그 중 SPC 그룹 회장(A) 등 10명은 2021. 5.경 승진인사에서 ㄴ노조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취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 (G, R) (주)피비파트너즈 노무총괄 전무(G)는 ㄴ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B/FMC*, 소속 노조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ㄴ노조 위원장(R)에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BMC(Baking Manager Coach), FMC(Fresh Manager Coach)는 각 매장에 배치된 제빵/카페 기사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중간 현장관리자

나. L노조 조합원 모집 및 언론·국회 대응에 활용

- (A, B, G 공동범행) 공모하여 2019. 7.경 L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L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약 6주 만에 조합원 900여명을 증가시켜 L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 (A, B, C, D, E, F, G 공동범행) L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하여, 이에 대한 수사·언론 보도 및 국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요구가 이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21. 4.~2022. 8.경 L노조 위원장(R)에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하는 등 L노조 운영에 지배개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II

주요 수사 경과

- 2022. 10. 당청, L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접수
- 2022. 11. ~ (주)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 등 200여명 전화·소환 조사 / (주)피비파트너즈 소속 사업부장·제조장·BMC 80여명 소환 조사
- 2022. 12. 7. SPC 그룹 본사 및 (주)피비파트너즈 사업본부 압수수색
- 2023. 10.~12. SPC 그룹 본사 등 3회 압수수색
- 2023. 11. ~ SPC 그룹 소속 임직원 등 20여명 소환 조사
- 2023. 11. G·H 구속영장 기각
※ 기각 사유 요지 : 잘못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임
- 2024. 3. 22. B 구속 기소 (2024. 3. 4. 구속)
- 2024. 4. 21. A 구속 기소 (2024. 4. 5. 구속), C 등 16명, (주)피비파트너즈 각 불구속 기소

III

주요 수사 결과 및 의의

□ 사건의 배경·경과

- SPC 그룹은 국내 최대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여명을 각 매장에 배치하였는데, ㄱ노조는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 등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과태료 약 162억 원이 부과되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SPC 그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8. 1. 11. 사측·양대 노조·가맹점주·국회·시민단체의 참여하에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고 본건 자회사인 (주)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후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 2018. 1. 11. 사회적 합의 주요내용 >

- ▲ 자회사 통해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 ▲ 본사 직원과 3년 내 동일임금 약속
- ▲ 부당노동행위(특정노조 가입권유 등) 시정, 불법파견 관련 유감표명

- 회장 A는 ㄱ노조의 활동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7. ㄱ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대표이사 B를 질책하며 사측에 친화적인 ㄴ노조를 과반수 노조로 만들어 ㄱ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대표이사 B는 (주)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하여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 또한 ㄱ노조에서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비판하는 집회를 이어가자, 회장 A는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이 우려된다면서 대표이사 B에게 ㄱ노조 조합원 탈퇴 작업을 지시하고, 대표이사 B의 지시를 받은 (주)피비파트너즈 임원들, 8개 사업부장·제조장·현장관리자들은 조직적으로 ㄱ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탈퇴를 종용하였습니다.
- 한편, SPC 그룹은 수사·언론 보도·국회의 검증 요구 등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사회적 합의' 불이행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할 때마다, ㄴ노조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노사(勞使) 갈등'을 '노노(勞勞) 갈등'으로 전환시켜 회사 리스크 관리에 이용하였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탈퇴 종용 범행 규명 [ㄱ노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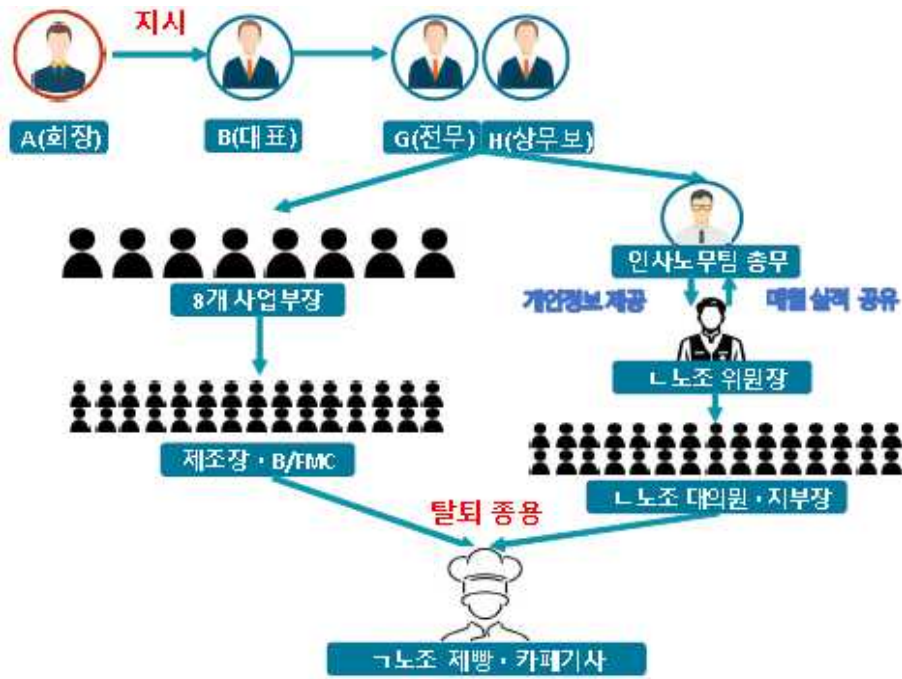
- 회장 A의 지시로 시작된 탈퇴 종용 작업은, 대표이사 B를 통해 (주)피비파트너즈의 임직원들 및 ㄴ노조 위원장에게 순차 전달되어, (주)피비파트너즈 소속 사업부장·제조장·B/FMC 등은 ㄱ노조 조합원 총 570여명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탈퇴 종용 작업을 진행하였고(그 중 560여명이 ㄱ노조에서 탈퇴),
 - ㄱ노조 탈퇴 조합원 수 등 작업 결과를 취합하여 수시로 대표이사 B를 통해 회장 A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노무를 관리하는 (주)피비파트너즈 인사노무팀 과장은 노무 총괄임원인 전무 G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업무의 일환으로 취합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B/FMC, 소속 노조 등이 기재된 명단을 ㄴ노조 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탈퇴 작업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주)피비파트너즈 임원] 8개 사업부별로 ㄱ노조 탈퇴자 현황을 취합하여 대표이사 B에 보고하였고, 특히 전무 G는 매월 목표 탈퇴 숫자를 지정하여 8개 사업부장에게 지시하였음

△ [사업부장] 매월 지정받은 목표 탈퇴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 제조장·B/FMC를 독촉하였고, 일부 사업부장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음

△ [제조장·B/FMC] 한 제조장은 B/FMC들이 탈퇴 실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ㄴ노조 위원장에게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되냐”라고 묻기도 하는 등 8개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가 계속되었음

- 그 결과, ㄱ노조 조합원 수(체크오프 기준)는 6개월만에 730명(2021. 1월)에서 336명(2021. 6월)으로 급감하였고, 반면 ㄴ노조는 3,370명(2021. 1월)에서 3,946명(2021. 6월)으로 증가하여, 결국 ㄱ노조의 조합원 수가 ㄴ노조 대비 약 8.5%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인사불이익 확인 [노조 관련]

- 또한 사측은 탈퇴 종용 작업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승진인사 정성평가 시 원칙적으로 승진할 수 없는 'D등급'을 주거나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주)피비파트너즈는 노무직 근로자(B/FMC, 제빵·카페기사)에 대한 승진 인사 시, 정량평가(70%), 정성평가(30%)를 더한 총점 순위에 사업부장 추천을 종합하여 승진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확정된 다음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하는 시스템으로 진행하였음

- △ [L 사업부장] 제조장들에게 “노조 소속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해라”라고 지시
- △ [M 사업부장] 제조장들에게 “본사에서 보내준 명단에서 승진 가능한 순위권에 노조 소속 기사들이 있으니 승진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를 부여할 때 불이익을 줘라”라고 지시
- △ [J 사업부장] “(노조 소속 기사들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낮은 점수를 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
- △ [K 사업부장] “(특정 노조 소속 기사는) 노조 간부로 시위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고 진술

- 그 결과 2021. 5.경 승진인사에서 1노조 조합원들은 승진대상자 중 불과 약 6%만 승진(1노조는 약 30%, 비노조원은 약 20%)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 리스크 관리의 도구로 활용된 노동조합 [1노조 관련]

- 검찰은 SPC 그룹이 1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서 더 나아가, 1노조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측에 친화적인 1노조를 리스크 관리 도구로 활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 먼저, 2019. 7.경 사측에 비판적인 1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그 지위를 번복시키기 위해 회장 A, 대표이사 B의 순차 지시로 1노조 조합원 모집 작업을 추진하면서 기사들의 근무지, 담당 B/FMC, 소속 노조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여,
 - 그 결과 1노조는 불과 약 6주 만에 기존 조합원 수가 약 1,760명에서 2,660여명으로 약 900여명 급증하여 과반수 노조 지위를 획득하였고, 1노조 지회장은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SPC 그룹은 1노조와의 노사 분쟁이 외부에 문제 상황으로 불거질 때마다 1노조로 하여금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있는 것처럼 대응방침을 정했습니다.
 - 이러한 방침에 따라, SPC 그룹은 노사 갈등 상황이 보도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 1노조 위원장(R)에게 사측의 입장이 반영된 인터뷰를 하게 하거나 성명서 초안 등을 제공하여 발표하게 하고, 심지어 R 위원장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인터뷰 내용을 기재한 기사 초안을 기자에게 전달하여 보도되게 하는 등 1노조의 운영에 개입하였습니다.
- 나아가 SPC 그룹은 국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요구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급여’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도, 국회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1노조를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 즉 SPC 그룹은 국회의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18. 1. 11.자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L노조로 하여금 (주)피비파트너즈에 위와 같은 국회의 검증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SPC 그룹은 국회의 검증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 또한 SPC 그룹은 R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회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잘 이행되었다고 말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수사기관 관계자 매수 범행 확인

- 한편 검찰은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가 회장 A 등에 대한 배임 등 수사(△△△ 주식 저가양도 배임 사건, △△ 통행세 부당지원 사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수사관을 매수하여 각종 수사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대표이사 B, 홍보실장 F는 2020. 9.~2023. 5.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600만 원 상당의 향응 등을 제공하였고,
- 대표이사 B는 홍보실장 F가 입수한 수사 기밀들을 보고받고 前 고문 C를 통해 회장 A에게 보고하여, 회장 A와 자신의 수사 대비에 활용하였습니다.
- 검찰은 약 2년 8개월간 이어진 홍보실장 F 및 검찰수사관의 뇌물공여·공무상 비밀누설 등 사건의 전모를 밝혀 '24. 2. 23. 각 구속기소하였고,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대표이사 B의 뇌물공여 사건도 '24. 3. 22. 구속기소하였습니다.

IV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별첨]

	피고인 (연령) 범행 당시 신분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 (74세) SPC 그룹 회장	① '19. 7.~8. L노조 소속 조합원 모집 ② '21. 2.~'22. 7. L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③ '21. 5. 정기승진 시 L노조 소속 조합원 승진 차별 ④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⑤ '21. 6~7.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⑥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⑦ '22. 7.~8. L노조 활용 국회 대응	'24. 4. 21. 구속 기소
2	B (62세) SPC 대표이사 (주)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	① '19. 7.~8. L노조 소속 조합원 모집 ② '21. 2.~'22. 7. L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③ '21. 5. 정기승진 시 L노조 소속 조합원 승진 차별 ④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⑤ '21. 6~7.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⑥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⑦ '22. 7.~8. L노조 활용 국회 대응	'24. 3. 22. 구속 기소 ※ 뇌물공여 범행도 같은 날 구속 기소
3	C (70세) SPC 고문	①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②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24. 4. 21. 불구속 기소
4	D (59세) SPC 커뮤니케이션본부장	①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② '21. 6~7.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③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④ '22. 7.~8. L노조 활용 국회 대응	'24. 4. 21. 불구속 기소
5	E (63세) SPC 대외협력실장	○ '22. 7.~8. L노조 활용 국회 대응	'24. 4. 21. 불구속 기소
6	F (58세) SPC 홍보실장	①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② '21. 6~7.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③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24. 4. 21. 불구속 기소 ※ 뇌물공여 등 범행은 '24. 2. 23. 구속 기소
7	G (63세) (주)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임원	① '19. 7.~8. L노조 소속 조합원 모집 ② '21. 2.~'22. 7. L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③ '21. 4.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④ '21. 6~7.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⑤ '22. 5. L노조 활용 언론 대응 ⑥ '21. 3. 제빵기사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 제공	'24. 4. 21. 불구속 기소
8	H (55세) (주)피비파트너즈 품질관리실장	② '21. 2.~'22. 7. L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② '21. 5. 정기승진 시 L노조 소속 조합원 승진 차별	'24. 4. 21. 불구속 기소
9	I (64세) (주)피비파트너즈 2사업본부장 겸 고문	○ '21. 3.~'22. 7. L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24. 4. 21. 불구속 기소

10	J (50세) (주)피비파트너즈 서울동부사업부장	① '21. 2.~'22. 7. 그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② '21. 5. 정기승진 시 그노조 소속 조합원 승진 차별	'24. 4. 21. 불구속 기소 / P·Q의 ② 범죄사실은 불기소
11	K (56세) (주)피비파트너즈 서울남부사업부장		
12	L (58세) (주)피비파트너즈 서울북부사업부장		
13	M (54세) (주)피비파트너즈 서울서부사업부장		
14	N (61세) (주)피비파트너즈 대전충청사업부장		
15	O (57세) (주)피비파트너즈 부산경남사업부장		
16	P (55세) (주)피비파트너즈 대구경북사업부장		
17	Q (61세) (주)피비파트너즈 광주전라사업부장		
18	R (53세) 그노조 위원장	① '21. 2.~'22. 7. 그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② '21. 3. 제빵기사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단 제공받음	'24. 4. 21. 불구속 기소
19	(주)피비파트너즈	① '21. 2.~'22. 7. 그노조 소속 제빵기사 상대 탈퇴 종용 ② '21. 5. 정기승진 시 그노조 소속 조합원 승진 차별	'24. 4. 21. 불구속 기소

※ (주)피비파트너즈 소속 일부 사업부장·제조장 등 24명은 지위·역할·가담 정도 등 고려하여 각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